

<p>(1)우선채권 : 금 “없음” 원 (2)일반채권 : 금 26,814,935,287원</p> <p>2. 배당할 수 있는 금액 : 금 2,350,000,000원</p> <p>(1)우선채권 : 금 “없음” 원 (2)일반채권 : 금 2,350,000,000원</p> <p>2005년 9 월14일</p> <p style="text-align: right;">파산자 김해신용협동조합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대리인 배성도</p> <p style="text-align: center;">~~~~~</p> <p>2003 하합 7 파산선고</p> <p>파 산 자 남천신용협동조합 김해시 서상동 330의 15</p> <p>위 사건에 관하여 본 파산관재인은 제4회 배당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다 음</p> <p>1.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총액 금 15,523,400,064원</p> <p>(1)우선채권 : 금 “없음” 원 (2)일반채권 : 금 15,523,400,064원</p> <p>2. 배당할 수 있는 금액 : 금 1,150,000,000원</p> <p>(1)우선채권 : 금 “없음” 원 (2)일반채권 : 금 1,150,000,000원</p> <p>2005년 9 월14일</p> <p style="text-align: right;">파산자 남천신용협동조합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대리인 배성도</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견 해</p> <p style="text-align: center;">통보번호 1119/2002</p> <p><u>통보인</u> : 이정은(대리인 김승교 변호사) <u>피해자</u> : 통보인 <u>당사국</u> : 대한민국 <u>통보일</u> : 2002. 8.23.(최초제출) <u>관련문서</u> : 특별보고관의 규칙 제97조에 따라 2002년 9 월20일 대한민국에 보낸 결정(문서형태로 되어 있지 않음)</p>	<p><u>결해채택일</u> : 2005. 7.20.</p> <p><u>주제사안</u> : 국가보안법에 따라 “이적단체”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통보인이 받은 유죄 판결 절차상 문제 : 통보인의 주장 입증 국내 구제절차 완료 여부 규약 제22조에 대한 당사국의 유보 적용가능성</p> <p><u>실체적 문제</u> : 사상과 양심의 자유 견해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허용여부 법 앞에 평등할 권리와 법의 보호를 동등하게 받을 권리</p> <p><u>관련 규약 규정</u> :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제22조, 제26조</p> <p><u>선택의정서 관련 규정</u> : 제2조, 제5조 제2항(b)</p> <p>2005년 7 월20일 인권이사회는 통보번호 1119/2002에 대하여 선택의정서 제5조 4항에 따라 그 견해를 채택하였다. 그 견해는 이 문서에 첨부되어 있다.</p> <p>[별 지]</p> <p style="text-align: center;">별 지</p> <p style="text-align: center;"><u>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u> <u>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4항에 따른</u> <u>인권이사회의 견해</u> 제84차 회기 다음 통보 관련 통보번호 1119/2002</p> <p><u>통보인</u> : 이정은(대리인 김승교 변호사) <u>피해자</u> : 통보인 <u>당사국</u> : 대한민국 <u>통보 제기일자</u> : 2002. 8.23.(최초 제출) <u>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 함) 제28조에 의거해 설립된 인권이사회는 2005. 7.20. 회의에서 동 규약 선택의정서에 따라 이정은을 위하여 제기된 개인통보에 대한 심리를</u></p>
---	---

<p>종결하고 통보인과 당사국에 의해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채택한다.</p> <p>선택의정서 제5조 제4항에 의한 최종견해</p> <p>1. 통보인 이정은은 1974. 2.22.생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는 대한민국이 규약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2조 제1항, 제26조를 위반하여 자신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한다. 변호사 김승교가 대리인이다.</p> <p>배경사실</p> <p>2.1 1993. 3. 통보인은 건국대학교 건축학과에 입학했다. 4학년 때 그는 건국대 부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에 따라 자동적으로 한총련의 가장 높은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의 구성원이 되었다. 한총련은 1993년 조직된 전국적인 대학생 연합이며(2002년까지) 건국대를 포함, 187개 대학이 가입되어 있고 한국의 민주화와 통일, 대학자치 옹호를 추구하는 단체이다.</p> <p>2.2 1997년 한국 대법원은 한총련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제3항의 “이적단체” 및 반국가단체라고 선고했는데, 이는 제5기 한총련의 강령과 행동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함으로써 통일을 이루겠다는 북한의 전략을 지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p> <p>2.3 2001년, 통보인은 제9기 한총련 대의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 2001. 8. 8. 그는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서울 동부지법은 그에게 징역1년과 자격정지1년을 선고하였다. 그의 항소는 2002. 2. 5. 기각되었고, 2002. 5.31. 대법원도 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p> <p>2.4 법원은 9기 한총련이 남북통일에 대한 두 정상간의 ‘6.15. 남북공동선언(2000)’을 지지하기 위해 한총련의 강령을 수정했다는 한총련의 주장과 한총련의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북한의 사상과 비슷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지을 수 없다는 통보인의 주장을 배척했다.</p>	<p>2.5 통보제기 당시 통보인은 경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p> <p>주 장</p> <p>3.1 통보인은 ‘이적단체’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로 인한 유죄판결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규약 제18조), 의견의 자유(제19조 제1항), 표현의 자유(제19조 제2항), 결사의 자유(제22조 제1항), 법 앞의 평등(제26조)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p> <p>3.2 그는 한총련의 대의원이라는 이유로 인한 유죄판결은 그가 그 단체에 자유로운 의지와 양심에 따라 가입한 것이므로 규약 제18조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한다.</p> <p>3.3 인권이사회의 결정을 참조하여 통보인은 ‘이적단체’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로 인한 유죄판결은 9기 한총련의 실질적 활동이 아닌 그 조직의 이념적 성향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규약 제19조의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인권이사회가 국가보안법 제7조를 규약 제19조 제3항에 반한다고 비판한 점을 강조한다.</p> <p>3.4 통보인은 한총련 대의원으로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것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이라고 한다. 더구나 한총련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음에도 그의 유죄판결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므로 규약 제26조 위반이라고 주장한다.</p> <p>3.5 통보인은 인권이사회가 당사국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 3항 폐지 및 적용 중단, 재심을 통한 무죄판결,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것을 청구한다.</p> <p>3.6 통보의 심리적격(admissibility)과 관련, 통보인은 이번 사안에 대해 다른 국제기구에서 심사받고 있지 않으며, 국내 구제절차를 완료했다고 한다.</p>
--	---

<p>심리적격 및 본안에 대한 당사국의 의견</p> <p>4.1 2003. 5. 8. 답변에서 당사국은 국가보안법 제 7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통보인의 유죄판결은 국가안보와 민주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화 된다고 주장하며 본안에 대하여만 다투었다. 당사국은 규약 제18조 제3항, 제19조 제3항, 제22 조 제2항과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보, 법과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한국을 ‘공산화’ 한다는 혁명목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와 민주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로부터 반복적으로 합헌 이라고 선고되어 왔다. 당사국은 독립된 재판부에 의한 공정한 재판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의 정당한 적용에 따른 통보인에 대한 유죄판결은 규약과 헌법에 합치된다고 결론지었다.</p> <p>4.2 당사국은 제9기 한총련이 강령을 수정했고, 한총련의 목적 중 일부가 북한의 사상과 비슷하다고 해서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는 통보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당사국은 단체의 계획, 규정, 문서들이 한총련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주장한다.</p> <p>4.3 마지막으로 당사국은 진정한 정치적 신념에 따라 차별받았다는 것을 부인한다. 당사국은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법이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고 한다. 통보인은 그의 정치적 신념 때문이 아니라 그의 행위가 사회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기소된 것이다.</p> <p>이사회에 통보인에 대한 진술 요구</p> <p>5. 2003. 5.13. 당사국의 의견이 통보인의 변호인에게 전달되었다.</p> <p>2003.10. 8., 2004. 1.26., 2004. 7.13. 세 번의</p>	<p>요청이 있었지만 변호인 측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p> <p>논점과 이사회 심리</p> <p>심리적격의 판단</p> <p>6.1 통보에 포함된 어떤 주장을 검토하기 전에, 인권이사회는 절차규칙 제93조에 따라 통보가 심리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p> <p>6.2 인권이사회는 이번 사안이 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제2항(a)에 따라 다른 국제적 조사나 해결절차에서 심사되지 않고 있음과, 선택의정서 제5조 제2항(b)가 요구하는 대로, 국내 구제수단을 모두 거쳤음을 확인했다.</p> <p>6.3 이사회는 통보인이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정치적 신념에 의한 차별로 규약 제26조를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심리적격과 관련하여 아무런 입증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선택의정서 제2조에 따라 이 부분은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p> <p>6.4 규약 제22조 위반 주장에 대하여는 인권이사회는 당사국이 국가보안법 관련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언급한 것을 주목한다. 그러나 규약 제22조에 관해 “대한민국 헌법을 포함한 국내법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는 제22조에 대한 당사국의 물적 관할(ratione materiae) 유보가 원용되지 않았으므로 따라서 이사회는 위 유보와 규약의 목적이 양립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 없이 이 사건에서 규약 제22조 위반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p> <p>6.5 그러므로 이사회는 규약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22조 위반 문제에 관하여는 통보의 심리가 허용된다고 선언한다.</p> <p>본안판단</p> <p>7.1 인권이사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 제1항에 의거, 양 당사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에 입각하여 본 건 통보를 검토하였다.</p>
--	--

7.2 인권이사회가 판단할 문제는 한총련 가입으로 인한 통보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불합리하게 그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여 규약 제22조를 위반했는지 여부이다. 이사회는 규약 제22조 제2항에 의해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본다. (a) 법에 의한 제한이어야 한다. (b) 제2항에 열거된 목적중 하나를 위한 제한이어야 한다. (c)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제한이어야 한다. 여기에서의 ‘민주사회’에 대한 언급은, 이사회는, 정부나 사회 다수에 의해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상을 평화롭게 추구하는 결사를 포함하여 다수 결사의 존재와 활동이 민주사회의 기초 중의 하나라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의 존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사국은 결사의 금지와 조직 가입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국가안보와 민주질서에 단순한 가상적인 위협이 아닌 실제적인 위협을 피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임과, 이보다 덜 개입적인 방법은 이 목적 달성에 불충분함을 설명해야 한다.

7.3 통보인에 대한 유죄판결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에 근거한 것이다. 고려되어야 할 결정적인 질문은 이러한 방법이 규약 제22조 제2항에 열거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가 하는 점이다. 이사회는 당사국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와 민주질서를 보호할 필요성을 상기시킨 점을 주목한다. 그러나 당사국은 통보인이 한총련에 가입함으로써 야기된다고 주장하는 위협의 정확한 성질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사회는 1997년 이 단체를 ‘이적단체’라고 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결정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민주질서를 위협할 수도 있는’ 단체에 대한 지지를 금지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것

임을 주목한다. 이사회는 또한 당사국과 법원이 더구나 한총련이 2000년 남북공동선언을 인정한 후에도 한총련 가입에 대해 통보인을 처벌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민주질서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을 피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지 못했음을 주목한다. 그러므로 이사회는 통보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국가안보와 민주질서, 규약 제22조 제2항의 다른 목적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사회는 통보인에 대한 결사의 자유 제한이 규약 제22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따라서 규약 제22조 제1항 위반이라고 결론짓는다.

7.4 이러한 견지에서, 이사회는 통보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규약 제18조 제1항, 제19조 위반인지의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8. 인권이사회는 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제4항에 따라, 본건의 사실관계가 규약 제22조 제1항 위반이라는 견해를 밝힌다.

9. 규약 제2조 제3항에 의거하여 통보인은 적절한 보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사회는 당사국이 국가보안법 제7조를 규약에 합치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당사국은 유사한 위반이 장래에 또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10.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 됨으로써 당사국은 이사회에 조약 위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권한을 인정하였고, 규약 제2조에 따라 당사국은 영토 내에 있거나 재판권이 미치는 모든 개인에게 규약에 인정된 권리를 보장할 의무와 규약 위반시 효과적이고 집행 가능한 구제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띠게 되었음을 상기하면서, 이사회는 90일 이내에 본 견해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정보를 받고자 한다. 또한 당사국이 이사회에 최종 견해를 공표하기를 바란다.